

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
의안번호	2472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2. 2.

발 의 자 : 금천구의회 의장

1. 목 적

2023 회계연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0조(결산),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.

2. 검사위원의 수 : 4명

- 구의원(대표위원) : 1명
- 의원 이외의 자 : 3명(세무사)

3. 선임 대상자

직 위	성 명	출생년도	주 소	자 격	비 고
대 표 위 원	엄샛별	1987	시흥대로73길 70(시흥동) 금천구의회	구의원	02-2627-2122
위 원	김현호	1962	금천구 두산로 70 B동 2201호	세무사	02-830-4200
위 원	신원준	1990	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3-14	세무사	02-6082-2497
위 원	송재호	1989	서초구 서초대로19길 10-21, 6층	세무사	02-6959-9482

4. 검사기간

- 검 사 기 간 : 2024. 3. 22. ~ 4. 11.(20일간) ※선거일(4.10) 제외
- 의견서 작성 : 2024. 4. 12. ~ 4. 21.(10일간)

5. 선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0조(결산)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
-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관계법령

[지방자치법]

- 제150조(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- 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**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[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04.08., 2023.3.15.>

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) ①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.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(이하“의원“이라 한다)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3.3.15.>

1. 공인회계사,세무사 등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2.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,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의회“ 라 한다)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.. <개정 2023.3.15.>

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08.04.08., 2023.3.15.>

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

④ 검사기간중 검사위원이 궐원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임하되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검사위원중 의원은 당연히 대표위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3.3.15.>

제4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「지방회계법」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세입·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7.04.18., 2023.3.15.>

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완료후 10일이내에 감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.

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. 다만,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5조(검사위원의 신분상실)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. 이 경우 의회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0.10., 2023.3.15.>

1.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
2.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
②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08.04.08., 2023.3.15.>

1.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2.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

제6조(실비보상)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하되,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04.08., 2009.05.14., 2013.10.31.>

② 감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07.04.18., 2008.04.08., 2013.10.31.>

③ 감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감사를 개시한 날부터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. 다만,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실비보상을 하되 이 경우 의원인 감사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감사의 협조) ① 구청장은 감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, 집기,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감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